

2026년 제1회 경상남도의회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 제1회 경상남도의회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상남도의회의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기관	근무처	선발인원	주요임무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경상남도의회 (창원시 의창구)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회 및 시위 등에 따른 청사방호◆ 민원 안내 및 집단·악성민원 대응◆ 도난, 화재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 차량통제 및 각종 행사 시 질서유지 등◆ 기타 청사방호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험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체력시험 (예정)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10.22.(목)	11.2.(월)~11.4.(수)	11.11.(수)	11.20.(금)	11.26.(목)~27.(금)	12.3.(목)

※ 체력검정,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향후 시험 일정, 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
남도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gyeongnam.go.kr>)에 게시

(도의회 홈페이지 ⇒ 열린의정 ⇒ 시험정보)

3. 응시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8.12.31. 이전 출생자)

-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에 한함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적용

○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 ①, ②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소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개편 등에 의하여 현재 경상남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주소지 합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거주기간은 “역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 (「민법」 제160조)

-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를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연속하지 않은 기간 합산 시 최종 월은 30일을 기준으로 1개월로 함)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신체조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일정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하며,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주·야간 휴일 교대근무 및 24시간 중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며,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4. 시험 방법

▶ 공개경쟁임용시험(서류전형⇒체력검정⇒인성검사·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심사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시험 방법 : 거주지, 연령 등 임용자격 요건 및 자격증 소지 여부, 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등 서류전형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아래와 같이 선발예정인원의 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임용기관	선발예정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기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1	8배수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 자 중 자격증 등 평가항목 합계점수의 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까지 포함

○ 평가 항목

< 유의사항 >

- 배점 항목 및 내용은 원서접수 마감일(26. 11. 4)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무도단증은 공고문 상 <무도단체 현황>을 참고하여 인정하는 자격증만 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 요건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배점 항목 및 내용(50점 만점)							
무술 유단증 (단증 합산 적용)		유사경력 (전직경찰, 청원경찰, 민간경비업체 현장근무경력)		자격증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관련학과 졸업 (경찰, 경호, 경비 전공분야)	
배점	단별	배 점	기간별	배점	자격증별	배점	학년
15점	4단 이상	5점	48월 초과	20점	일반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1급	10점	4년제 졸업
		4점	36월 초과~48월 이하				
11점	3단	3점	24월초과~36월 이하	15점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5점	3년제 이하 졸업
8점	2단	2점	12월 초과~24월 이하				
5점	1단	1점	1월 초과~12월 이하				

점수인정 무도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1개)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8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세계합기도협회△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대한검도연합회△한국무예진흥원△세계용무도연맹△대한민국합기도회△대한프로태권도협회△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나. 2차 시험 : 체력검정

○ 심사대상 :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검정종목 : 4종목(악력,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합격자결정 : 4종목 총점(40점)의 2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 (50점) 점수와 체력검정(40점x1.25=50점)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5배수를 초과할 경우, 그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측정기준표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점)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제자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다. 3차 시험 : 인성검사·면접시험

○ 대 상 : 제2차 시험(체력검정) 합격자

○ 인성검사

- 면접시험일 전 실시하며, 결과분석자료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정해진 기간 내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검사 실시
- 인성검사 일정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평정표”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평정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합격자 결정 기준

- 면접시험 평정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

- ◆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합격
- ◆ **보통** : 우수, 미흡 이외의 경우 ⇒ 서류전형(50점) 점수와 체력시험(40점 ×1.25=50점)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불합격

○ 동점자 처리(①, ②, ③ 順으로 적용)

-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자격증 소지자 중 고득점자 順
- ③ 관련학과 졸업자 중 고득점자 順

- 추가합격 : 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취소, 임용승인거부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gyeongnam.go.kr>)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26. 11. 2.(월) ~ 11. 4.(수)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 주말(토,일)접수불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경상남도의회 의정담당관 인사담당(1층)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 주 소 : ☎ 511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의회 의정담당관 인사담당
- 유 효 일 : 마감일 소인분에 한정(택배, 퀵서비스 활용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은 반드시 담당자 전화확인 후(055-211-7044) 송부

- ※ 응시표는 2차(체력) 시험 시작 20분전 신분증 대조 후 일괄배부
- ※ 응시번호는 '26.11.10.(화)전까지'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개별통보 예정, 통보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확인
 - 응시번호 미교부·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6.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실시
-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하므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7. 제출 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도의회 홈페이지 ⇒ 열린의정 ⇒ 시험정보) (<https://council.gyeongnam.go.kr>)

①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② 응시원서

- 응시수수료 : 무료

③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불가)

④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시행관청에서 별도 조회

⑥ 경력사유 부존재 확인서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양식)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 제출**
-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함
(예시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1부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전직경찰, 청원경찰, 민간경비업체 현장 근무
- 발행기관(기업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제출일 기준
※ 비정규직(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②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 출력 또는 공단 방문
- 발급요령 :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토를 위해 가입기간을 “전체기간” 선택
-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할 경우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③ 최종 학력증명서 1부(원본)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증명서(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 학위(학과)명에 “경찰”, “경호”, “경비” 포함 시 관련학과 졸업 인정

④ 동일계통 학위(학과)증명서(원본) 1부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⑤ 자격증 사본(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⑥ 공인무도 단증 (사본) ※ 점수인정 무도단체 현황 참고

⑦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 전형 시 가점은 적용되지 않으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결정

8. 응시자 유의사항

- 가.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변경 공고합니다.
-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인 경우라도 자격요건(신체조건 등)에 미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마. 체력검정은 **2026. 11. 20.(금)** 실시 예정이오니, 체력검정 대비와 사고 방지를 위하여 평소 건강관리 및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사.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아.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차.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선발취소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의정담당관(인사담당 ☎055-211-7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